## 붙임 [농식품부]남은음식물사료 조치사항 및 관련 규정

## 1. 조치사항

- (시・도) 제조업자 일제점검 및 행정처분 등 관리 철저
  - (제조업자대상)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자에 대한 일제점검
    - (점검항목) 반추동물 및 가금 사육농가 대상 판매 및 공급 적정 여부
    - \* 남은음식물사료는 반추동물용 및 가금용(수분14% 이하 제외) 사료의 판매·원료사용 금지
    - (점검방법)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자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제조공정 (시설) 및 장부 등을 검사(법 제27조제1항)하여 점검항목 해당 여부를 확인
    - (후속조치) 점검결과 점검항목에 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행정 처분 및 형사 고발 조치(법 제14조제1항제7호)
  - (축산농가대상) 처분대상 제조업자로부터 대상사료 공급받은 농가 고발
    - 남은음식물사료 제조업체의 장부 등을 통해 남은음식물사료를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반추동물 및 가금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농가에 출입하여 검사(법 제27조제2항) 후 사실 여부가 확인된 경우 고발 조치(법 제14조제2항)
- (생산자단체・단미사료협회) 회원(사) 대상 해당사례 공유 및 남은 음식물사료 관련「사료관리법」준수사항 교육 실시

## 2. 관련 규정

「사료관리법」 제14조(제조·수입·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) ① 제조업자·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를 제조·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7. 인체 또는 <u>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등의 질병원인이 우려되어</u>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동물등의 부산물·남은 음식물 등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
- ② 누구든지 동물등에게 제1항제7호의 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「**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」제11조(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)** ④ 법 제14조제1항제7호의 전단 규정에서 "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등"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.

- 1. 소해면상뇌증 등 과 관련이 되는 소·사슴·양(면양·염소) 등 반추동물
- 2. 조류인플루엔자(AI)와 관련이 되는 닭·오리·꿩·거위·메추리·칠면조·타조 등 가금류
- ⑤ 법 제14조제1항제7호의 후단의 규정에서 제4항의 동물등에 "질병원인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동물등의 부산물·남은음식물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"이라 함은 별표 19와 같다.

[별표 19]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물질(제11조제5항 관련)

- 1. 소 등 반추동물에게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물질
- 마. <u>남은음식물(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) 및 남은음식물사료</u>
- 2. 닭 등 가금류에게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물질
- 가. 남은음식물(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). 다만, 제4조에 따른 단미사료 중 수분 14%이하로 제조된 남은음식물사료는 사용이 가능하다.
- 제27조(감독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<u>시·도지사는</u> 사료의 수급조절 및 품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·수입업자,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<u>제조업자</u>·수입업자·판매업자·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의 <u>사무소·공장 또는 창고에</u> 출입하여 장부·서류·사료,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 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<u>시·도지사는</u> <u>제14조제1항제7호의 사료를 동물등에게</u> <u>사용금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<mark>농가 등에</mark> 출입하여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</u>
- 제33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<u>3년 이하의 징역 또는</u> <u>3천만원 이하의 벌금</u>에 처한다.
  - 1.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료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한 자
  - 2.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료를 사용한 자